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(박덕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650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2. 7.

발 의 자 : 박덕흠 · 이용호 · 이종성
지성호 · 박대수 · 하영제
백종헌 · 강대식 · 김성원
조명희 · 이현승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제25조에서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시행자 선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, 재개발사업 중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추진하거나, 구청장 등 기타 사업자들과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대도시의 경우 재개발사업 대상이 되는 토지의 토지등소유자가 20명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로 조합형식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바, 재개발사업의 과정과 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 사업시행을 어렵게 만드는 사유로 지적되고 있음.

이에 토지등소유자 요건을 20명에서 50명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재개발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5조제1항 제2호).

법률 제 호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1항제2호 중 “20인”을 “50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)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(재개발사업·재건축사업의 시행자) ① 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.	제25조(재개발사업·재건축사업의 시행자) ①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토지등소유자가 <u>20인</u>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·군수등, 토지주택공사등, 건설업자,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	2. ----- <u>50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